[별표 3]

국내에서 생산·소비되는 수산물 생산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

1. 육상오염원의 관리기준

1) 하수처리장

① 처리되지 않은 분변오염으로 이매패류, 피낭류 및 복족류 등(이하 "이매패류 등"이라 한다)이 생산되는 해역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지역을 "하수처리구역"으로 지정하고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.

② 하수처리장에는 하수와 관련된 잠재적인 미생물학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적절한 소독시스템(자외선 살균장치 등을 포함한다)이 설치 · 운영되어야 한다.

③ 자외선 소독시스템의 경우, 육안으로 자외선 소독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점검 · 확인할 수 있는 점검창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.

④ 하수처리장의 고장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방류되었을 때는 고장이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패류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출하 자제를 권고한다.

2) 개인하수처리시설(가정집 등의 정화조)

① 가정집 등의 정화조는 패류 등의 수확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거를 실시한다.

② 가정집 등의 정화조에 빗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 주변에 높은 테두리를 설치한다.

③ 패류 등의 수확기에는 가정집 등의 정화조가 넘쳐서(가득 찬 상태를 포함한다) 생산해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지 점검하고, 가득 찬 상태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한다.

3) 항구 · 포구 화장실

① 해역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해상에서의 분변 배출 차단을 위해 항구 · 포구에 공공화장실을 설치하고,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관리 · 점검을 실시한다.

② 항구 · 포구 화장실에는 선박용 이동식 화장실의 세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.

③ 항구 · 포구 화장실의 위생상태 점검 및 청소, 정기적인 분뇨 수거 등을 위해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4) 가축 분뇨

① 패류 생산해역 주변에 위치한 가축사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분뇨가 생산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.

② 가축 분뇨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패류 생산해역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5) 오염물질 투기 및 유출 방지

① 육상으로부터 패류 생산해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해역으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.

② 선박접안(接岸)시설에 설치되어 있거나 내버려 둔 유류저장탱크 등에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, 유류저장탱크 주변에 모래주머니를 갖춰야 한다.

2. 해상오염원의 관리기준

1) 어장관리선 및 낚시선 등 선박

① 선박 내에 사람의 분뇨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(휴대용 간이화장실을 포함한다)을 갖추고 이용해야 한다.

②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항구 · 포구 화장실이나 바다공중화장실 등의 적합한 처리시설이나 수단을 통해 폐기해야 한다.

2) 해상 양식시설 등(가두리 관리사 및 유어장을 포함한다)

① 사람의 분뇨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을 갖추고 이용해야 한다.

② 분뇨는 수거 등을 통해 바다에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③ 목욕 · 세탁 및 취사 등의 행위로 패류 등이 생산되는 해역을 직간접으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.

④ 개 · 고양이 등 동물을 사육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.

⑤ 생활쓰레기 등이 해양투기 되지 않도록 관리 · 처리해야 한다.

3) 해상 분변오염 차단시설(바다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다)

① 어업이나 레저활동 등과 관련하여 해상에서 분변 배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상이나 갯벌에 해상 분변오염 차단시설을 설치 · 운영한다.

② 해상 분변오염 차단시설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
③ 해상 분변오염 차단시설의 위생상태 점검 및 청소, 정기적인 분뇨 수거 등을 위해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.

3. 생산 · 채취하는 이매패류 등의 위생기준

1) 해양생물독소

① 마비성 패류독소(패류 및 피낭류): ≤0.8mg/kg

② 설사성 패류독소(이매패류): ≤0.16mg/kg

③ 기억상실성 패류독소(패류): ≤20mg/kg

2) 벤조피렌[Benzo(a)pyrene]

① 패류: ≤10.0㎍/kg

3) 중금속

① 납(패류): ≤2.0mg/kg

② 카드뮴(패류): ≤2.0mg/kg

③ 수은(패류): ≤0.5mg/kg

4) 대장균

① 생식용 굴: n=5, c=1, m=230, M=700 MPN/100g

5) 병원성미생물: 「식품위생법」 제4조제3호에 따라 병(病)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지 않을 것